

영업양수도계약

20년 월 일

AAA 주식회사
(양도인)

및

LLL 주식회사
(양수인)

목차

제 1 조	정의 및 해석	1
1.1	정의	1
1.2	해석	6
1.3	환율	6
제 2 조	양수도대상	6
2.1	양수도대상 자산	6
2.2	양수도제외 자산	8
2.3	이전대상 계약	8
2.4	승계대상 임직원	9
2.5	인수대상채무	9
제 3 조	양수도대금	10
3.1	양수도대금	10
3.2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금의 조정	10
3.3	부가가치세의 처리	13
제 4 조	거래종결	13
4.1	거래종결	13
4.2	양도인의 거래종결시의 교부 및 이행사항	13
4.3	양수인의 거래종결시의 교부 및 이행사항	16
제 5 조	진술 및 보증	16
5.1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16
5.2	양수인의 진술 및 보증	17
5.3	진술 및 보증의 존속기간	17
제 6 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18
6.1	양수인의 거래종결의무에 대한 선행조건	18
6.2	양도인의 거래종결의무에 대한 선행조건	20
제 7 조	확약사항	20
7.1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20
7.2	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23
제 8 조	해제	26
8.1	해제사유	26
8.2	해제의 효과	27
제 9 조	배상	27
9.1	배상의무	28
9.2	배상의무기간	28
9.3	손해배상의 제한	28
9.4	제 3 자의 청구	29
9.5	특별배상	30
9.6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GHP 제품 관련 손해배상	32
9.7	Break-up Fee의 지급	33
제 10 조	기타	34

10.1	통지.....	34
10.2	비밀유지.....	34
10.3	계약 양도.....	34
10.4	수정.....	35
10.5	완전합의.....	35
10.6	분리가능성.....	35
10.7	비용 및 세금.....	35
10.8	준거법.....	35
10.9	분쟁해결.....	35

별지

별지 1.1	기준 순자산액 및 목표 운전자본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별지 2.1(a)	양수도대상 건구축물
별지 2.1(b)	양수도대상 부동산 관련 권리
별지 2.1(c)	양수도대상 유무형자산
별지 2.1(d)	양수도대상 재고자산
별지 2.1(e)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
별지 2.1(f)	양수도대상 유가증권
별지 2.1(g)	양수도대상 영업권 등 및 고객관계
별지 2.1(h)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
별지 2.1(i)	양수도대상 채권 기타 권리
별지 2.1(j)	승계대상 소송
별지 2.1(k)	양수도대상 보험
별지 2.1(l)	양수도대상 예금, 현금, 현금등가물
별지 2.2	양수도제외 자산
별지 2.3(a)	이전대상 계약
별지 2.3(b)	필수이전대상 계약
별지 2.4(a)	승계대상 임직원
별지 2.5(a)	인수대상 채무
별지 3.2(f)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금 조정 절차 및 방법
별지 4.2(o)	해외 독점 distributor의 목록
별지 5.1(g)(1)	본건 사업에 대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별지 5.1(g)(2)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별지 7.1(g)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이 제공하기로 한 정보 또는 자료
별지 7.2(i)	협력업체의 명단
별지 9.6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GHP 제품

공개목록

별지 5.1(g)(1)에 대한 공개목록
별지 5.1(g)(2)에 대한 공개목록

첨부

첨부 4.2(f)	확인서
첨부 4.2(h)	임시서비스제공계약 대상, 주요조건 및 정보
첨부 4.2(i)	사임서

영업양수도계약

본 영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은 에 본점을 둔 AAA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와 빌딩에 본점을 둔 LLL 주식회사(이하 “양수인”) 사이에 2011년 3월 10일(이하 “본 계약 체결일”) 체결되었다.

전 문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각종 냉동기, 공기조절기, 냉난방 설비 등의 개발, 제조, 판매, 설치, 유지보수, 기타 서비스 등에 관련된 공조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자산, 계약, 인력 및 인수대상회사(제 1.1 조에 정의된 바에 따름)의 주식 또는 지분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정의 및 해석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거래종결”은 제 16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거래종결일”은 제 16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기준 순자산액”은 20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정된, 본건 사업 및 인수대상회사의 순자산액의 합계액 원을 의미다(본건 사업의 순자산액 원, 에이스의 순자산액 원 및 의 순자산액 원의 총 합계). 기준 순자산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1에 기재된 바와 같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는 곳으로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목표 운전자본금액**”은 349 억 원으로 한다. 목표 운전자본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1에 기재된 바와 같다.

“**본건 사업**”은 본 계약 서두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는 별지 5.1(g)(1) 제제 12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본건 부가가치세**”는 제 3.3 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본 계약**”은 본 계약 서두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본 계약 체결일**”은 본 계약 서두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부담**”은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선취특권 기타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과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행사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의미한다.

“**분쟁**”은 정부기관에 의한 또는 정부기관이 관여하는 청구, 소송, 중재, 조정 또는 조사를 의미한다.

“**비위반당사자**”는 제제 30 조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배상당사자**”는 제제 33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손해**”는 제 9.1 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수계대상 소송**”은 제제 6 조조 (j)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순자산액**”은 다음 A에서 B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1) 본건 사업의 경우, A는 총자산액에서 매출채권액, 재고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지분)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B는 총부채액에서 매입채무액(미투입원가를 제외함) 및 미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2) 인수대상회사의 경우, A는 총자산액을, B는 총부채액을 각각 의미한다. 위 각 금액은 모두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본건 사업, 에이스 및 KKK에 대한 각 재무제표상의 그것을 의미한다.

단, 총부채액 산정시에는, 위 각 재무제표상의 국책과제 관련 예수금 중에, 실제로 반환의무가 있는 기술료 부분(과제 종료 후 일시 반환을 전제로 한 금액을 의미함) 및 (해당하는 경우) 국책과제 관련 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미지급금 부분만을

부채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승계대상 임직원”은 제제 9 조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운전자본금액”은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으로 제제 13 조조 (e)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순자산액”은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본건 사업의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의 순자산액의 합계액으로, 제제 13 조조 (e)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도인”은 본 계약 서두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도인측 경업금지의무자”는 제제 28 조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인”은 본 계약 서두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건구축물”은 제제 6 조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보험”은 제제 6 조조 (k)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부동산 관련 권리”는 제제 6 조조 (b)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영업권 등 및 고객관계”는 제제 6 조조 (g)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유가증권”은 제제 6 조조 (f)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유무형자산”은 제제 6 조조 (c)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자산”은 제제 6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장부 기타 기록”은 제제 6 조조 (m)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재고자산”은 제제 6 조조 (d)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제외 자산”은 제제 7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는 제제 6 조조 (h)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은 제제 6 조조 (e)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양수도대상 채권 기타 권리”는 제제 6 조조 (i)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에이스”는 에이스냉동공조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에이스 주식”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스 발행 주식 100%를 의미한다.

“운전자본금액”은 본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액 및 재고자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매입채무액(미투입원가는 제외한다) 및 미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위반당사자”는 제제 30 조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이전대상 계약”은 제제 8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인수대상 채무”는 제제 10 조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인수대상회사”는 에이스 및/또는 KKK를 의미한다.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는 별지 5.1(g)(2) 제 5.1 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인수제외 채무”는 제제 10 조조 (b)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한국(본건 사업 및 에이스의 경우. 이하 같음) 또는 중국(KKK의 경우. 이하 같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의미한다.

“정부기관”은 정부(국내, 외국, 국제기구, 지방정부의 그것인지 불문한다) 또는 그 정부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또는 그 기관의 하부조직 또는 그 기관의 기구, 부서, 또는 법원, 중재인을 의미한다.

“주요계약”은 별지 5.1(g)(1) 제 5.1 조(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및 별지 5.1(g)(2) 제 7.1 조(인수대상회사와 관련하여)에 각각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변경”은 단일한 사태, 상황 또는 사건으로부터, 또는 다른 사태, 상황 또는 사건과 함께, (a) 본건 사업, 양수도대상 자산 및/또는 인수대상회사의 재정현황, 실적 또는 전망, (b) 양도인의 본 계약상 의무 이행, 및/또는 (c) 양도인이 본건 사업, 양수도대상 자산 및/또는 인수대상회사를 양도하는 능력에 대해 발생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단,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변경에서 제외한다.

“최저배상금액”은 제 9.3 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최종 양수도대금”은 제제 13 조조 (e)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최초 양수도대금”은 제제 12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은 양도인의 과거 일반적인 영업수행의 원칙과 관행에 부합하게 본건 사업을 매일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조건으로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의미한다. 단, (a)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지 않거나, (b) 독립된 제 3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c) 법령에 위반된 것이거나, (d) 본 계약에 위반된 것인 경우, 그러한 영업활동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본건 사업 및 에이스의 경우) 또는 중국관련 법령(KKK의 경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피배상당사자”는 제제 33 조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필수승계대상 임직원”은 승계대상 임직원 중 조직책임자, 고성과자 및/또는 후계자(successor)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의미한다.

“필수이전대상 계약”은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제 3 자와 체결한 일체의 서면 또는 구두계약 중 별지 2.3(b)에 기재된 계약들로서, 이에는 (i)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수주계약의 경우, 수주금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수주금액의 80%에 이를 때까지 수주금액이 가장 높은 수주계약부터 80%를 충족하게 되는 해당 수주계약까지의 수주계약들을 의미하고, (ii) 국내대리점계약의 경우, 2010 년도 거래 금액의 합계가 전체 거래금액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국내대리점계약에서 80%를 충족하게 되는 해당 대리점계약까지의 국내대리점계약들을 의미하며, (iii) CS 지정점계약의 경우, 2010 년도 거래 금액의 합계가 전체 거래금액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CS 지정점계약에서 80%를 충족하게 되는 해당 CS 지정점계약까지의 CS 지정점계약들을 의미하고, (iv) 원재료, 자재공급계약의 경우, 2010 년도 거래 금액의 합계가 전체 거래금액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원재료, 자재공급계약에서 80%를 충족하게 되는 해당 원재료, 자재공급계약까지의 원재료, 자재공급계약들을 의미하며, (v) 그 외에 위 (i) 내지 (iv)의 계약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들(해외 독점 및 비독점 distribution 계약 포함)로서 추가로 별지 2.3(b)에 기재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기간”은 제 3.2 조 (c)항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LSAQ”는 낙성공조계통(청도) 유한공사를 의미한다.

“KKK”는 낙성공조계통(산동) 유한공사를 의미한다.

“KKK 지분”은 양도인이 보유하는 KKK의 지분 100%를 의미한다.

제3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해석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a)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b) “또는” 혹은 “모든”은 기타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포함한다” 및 “포함하는”은 관련 항목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c) 법률에 대한 언급에는 해당 법률 및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공포된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하위 규정이 포함된다; (d) 본 계약에서 별지, 첨부 또는 조항에 대한 언급은 본 계약의 별지, 첨부 또는 조항에 관한 것이다; (e) 본 계약에 언급된 일수는 명시적으로 영업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역(歷)일수를 의미한다.

제4조 환율

본 계약상 KKK의 순자산액을 한국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환율은, 그 적용시점과 무관하게, 2010년 9월 30일 기준 원/위안화 환율인 1 위안 당 170.82 원으로 한다.

제5조 양수도대상

제6조 양수도대상 자산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그를 영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 건물, 설비, 채권,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노하우, 국내외 정부 및 기관의 인허가, 계약, 근로관계 등 모든 일체의 유무형의 자산 중 제 7 조조에 명시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 일체(이하 “양수도대상 자산”)를, 어떠한 부담도 없는 상태로,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종결일에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양수도대상 자산은 거래종결일 당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아래 각호 별지의 기재내용은 2010년 9월 30일(관련 별지에서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을 기준으로 준비된 예시적인 것으로 양수도대상 자산은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명확히 하자면, 별지 2.2 기재 양수도제외 자산은 어떤 이유로도 양수도대상 자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a) 건구축물: 별지 2.1(a)에 기재된 건물, 구축물 및 개량물(등기 여부를 불문한다)(이하 “양수도대상 건구축물”)

(b) 부동산 관련 권리: 양도인이 제 3 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기타 일체의 용익권 또는 담보권과 기타 이에 유사한 권리로서 별지 2.1(b)에 기재된 부동산 관련 권리(이하 “양수도대상 부동산 관련 권리”)

(c) 유무형자산: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설비, 기계, 공구, 전산장비, 자동차, 비품 등의 유무형자산으로서, 예시적으로 별지 2.1(c)에 기재된 유무형자산(이하 “양수도대상 유무형자산”)

(d) 재고자산: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원재료, 제품품 기타 재고자산으로서, 예시적으로 별지 2.1(d)에 기재된 재고자산(이하 “양수도대상 재고자산”)

(e) 지적재산권: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도메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출원 또는 등록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에 양도인이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노하우, 기술정보, 도면, 설계도 기타 일체의 무형자산으로서, 예시적으로 별지 2.1(e)에 기재된 지적재산권(이하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지주회사인 (주)LS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f) 유가증권: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별지 2.1(f)에 기재된 유가증권(에이스 주식 및 KKK 지분을 포함한다)(이하 “양수도대상 유가증권”)

(g) 영업권 및 고객관계: 양수도대상 자산에 관련된 영업권, 공사실적, 입찰자격 및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 일체로서, 예시적으로 별지 2.1(g)에 기재된 영업권 등 및 고객관계(이하 “양수도대상 영업권 등 및 고객관계”)

(h) 정부인허가: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등록, 인가, 허가, 신고서 등 일체의 정부인허가로서, 예시적으로 별지 2.1(h)에 기재된 정부인허가(이하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

(i) 채권 기타 제 3 자에 대한 권리: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종결일 전에 발생하여 거래종결일 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이 제 3 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기타 권리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보증인에 대한 권리 기타 담보권으로서,

예시적으로 별지 2.1(i)에 기재된 채권 기타 권리(이하 “양수도대상 채권 기타 권리”)

(j) 소송: 별지 2.1(j)에 기재된 소송(이하 “수계대상 소송”)

(k) 보험: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으로서 별지 2.1(k)에 기재된 보험(이하 “양수도대상 보험”)

(l) 예금, 현금, 현금등가물 등: 거래종결일 현재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금, 예치금, 현금 기타 현금 등가물 일체로서, 별지 2.1(l)에 기재된 계정 또는 계좌에 관련된 예금, 현금, 현금등가물.

(m) 장부 기타 기록: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된 장부, 계약서 원본, 업무매뉴얼, 지침서 기타 일체의 기록(이하 “양수도대상 장부 기타 기록”)

제7조 양수도제외 자산

별지 2.2에 기재된 자산(이하 “양수도제외 자산”)은, 본 계약 체결일 또는 거래종결일 현재 본건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도, 본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하며, 양도인이 거래종결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한다.

제8조 이전대상 계약

(a) 양도인은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제3자와 체결한 일체의 서면 또는 구두계약으로서 예시적으로 별지 2.3(a)에 기재된 계약(이하 “이전대상 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되,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해당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거나, 양도인, 양수인 및 해당 계약 상대방 사이에 이전대상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 계약(단,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형식 및 내용이어야 한다)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b)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어느 이전대상 계약과 관련하여 본 조 (a)항에 따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경우, 양수인의 결정에 따라, 해당 이전대상 계약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은 해당 이전대상 계약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양수인이 누릴 수 있도록 양수인이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거래종결일 이후에라도 이전대상 계약(거래종결일까지 본 조 (a)항에 따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것에 한한다)에 대해 본 조 (a)항에 따른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c) 이전대상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거래종결일 이전까지의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은 양도인에게, 거래종결일 및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거래종결일 이전까지의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권리 및 의무의 경우라도 각각 양수도대상 자산 및 인수대상 채무에 속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승계대상 임직원

(a)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된 임직원으로서, 별지 2.4(a)에 성명, 직급, 부서 및 직무가 기재된 양도인의 임직원(이하 “**승계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거래종결일 직전에 유효한 근로조건보다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종결일부터는 양수인이 해당 임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승계대상 임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수인은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양도인의 사용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양도인이 계속하여 사용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한다.

(b)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이전의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임금, 수당, 퇴직금지급채무(단,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의 퇴직금지급채무는 제외함)를 포함하여, 승계대상 임직원의 고용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승계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부담한다.

제10조 인수대상채무

(a) 양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거래종결일 전에 발생하여 거래종결일 당시 존재하고 있는 채무로서, 별지 2.5(a)에 그 항목과 금액이 특정된 채무(이하 “**인수대상 채무**”). 명확히 하자면, 별지 2.5(a)의 기재내용은 201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준비된 것이며, 해당 기재내용상의 항목 또는 금액과 관련하여 2010년 9월 30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이 2010년 9월 30일 기준 항목과 관련되어 본 계약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 3.2 조에 따라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금 조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양수인이 그 변동분을 인수하는데 동의하게 되면, 그 변동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인수대상 채무가 결정됨)를 그 특정된 범위 내에서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한다. 단, 인수대상 채무는 양도인이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제를 지연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b) 양수인은 별지 2.5(a)에 명시된 인수대상 채무를 그 항목과 특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또는 본 계약상 상반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업에 필요한지 여부 및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채무(이하 “인수제외 채무”)를 일절 인수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면,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이 제조, 공사 및 판매한 본건 사업 관련 제품에 관한 하자보수채무의 경우, 본건 사업 기준채무제표 또는 인수대상회사 기준채무제표에 총당금 설정 등으로 반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양수인이 이를 인수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위 제품에 관한 제조물책임은 인수하지 아니한다. 인수제외 채무는 양도인이 부담하며, 법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양수인이 인수제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게 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인수제외채무를 이행하게 된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손해를 보상하고, 양수인을 면책하여야 한다.

제11조 양수도대금

제12조 양수도대금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본건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본 조에 의한 조정을 전제로, 1,503 억 원(부가세 제외, 이하 “최초 양수도대금”)으로 한다.

제13조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금의 조정

(a) 거래종결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양도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본건 사업, 에이스 및 KKK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검토(감사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함)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 회계검토 비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위 대차대조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 및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순자산액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요청하는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 산정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i)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양도인, 에이스 및 KKK가 본 계약 체결일까지 일관되게 적용하여 온 것을 의미한다. 단, 양도인, 에이스 및 KKK가 본 계약 체결일까지 일관되게 적용하여 온 회계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ii) 회계검토티필 대차대조표 작성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본건 사업 기준채무제표 및 인수대상회사 기준채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대한 위 (i), (ii)호의 사항은 본 조항에만 적용되고, 본 조항 이외에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본 조 (a)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인은 양수인이 산정한,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순자산액에 대한 의견(수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도인이 위 45일의 기간 이내에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산정한 위 각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금액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c)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본 조 (a)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수인이 산정한,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순자산액에 대한 의견을 본 조 (b)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하 “협의기간”) 동안 위 각 금액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기간 이내에 이견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수인이 산정한,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순자산액은 그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와 같이 수정된 금액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d) 협의기간 이내에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이를 회부한다. 당사자들은 독립적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감사를 하도록 하고,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및 그에 따라 수정된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순자산액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대한 비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e)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i) 양수인이 산정한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 및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순자산액이 본 조 (b)항에 따라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본 조 (b)항에 따른 45일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또는

(ii) 본 조 (c)항 또는 (d)항에 따라 본건 사업에 대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순자산액이 수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수정된 때(본 조 (c)항에 따라 위 금액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 또는 본 조 (d)항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통지를 마지막 당사자가 수령하는 때)로부터 각각 5 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i) 최종 양수도대금이 최초 양수도대금보다 작은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자의 차액의 절대값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ii) 최종 양수도대금이 최초 양수도대금보다 큰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자의 차액의 절대값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

본건 사업에 대한 실제 운전자본금액 및 실제 순자산액 및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실제 순자산액에 따라 양수도대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그와 같이 조정된 양수도대금은 이하 “**최종 양수도대금**”이라 한다.

(i) 본 조 (b)항에 따라 간주되거나, 본 조 (c)항 또는 (d)항에 따라 수정된 운전자본금액(이하 “**실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그와 같이 간주되거나 수정된 순자산액(이하 “**실제 순자산액**”)이 각각 목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기준 순자산액보다 작은 경우, 각각의 차액의 절대값을 최초 양수도대금에서 공제한다.

(ii) 실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실제 순자산액이 목표 운전자본금액 및/또는 기준 순자산액보다 큰 경우, 각각의 차액의 절대값을 최초 양수도대금에 더한다.

(f)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 및 본 조 (a)항에 따른 회계검토필 대차대조표의 각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i) 본건 사업, 에이스 및 KKK 상호 간의 내부거래가 본건 사업, 에이스 및 KKK 의 채권, 채무 또는 미실현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ii) 그로 인하여 본건 사업의 운전자본 또는 순자산 또는 인수대상회사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제거하고, 그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조정 절차 및 방법은 별지 3.2(f)에 따른다.

(g) 양수인, 그 임직원, 대리인, 자문사는 옵저버(observer)의 자격으로 양도인이 본 조 제(a)항에 따라 회계검토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양도인은 회계검토필 대차대조표 작성과 관련하여 그 회계자문사에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와 동일한 자료 및 정보를 양수인, 그 임직원, 대리인, 자문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양수인, 그 임직원, 대리인, 자문사로 하여금 양도인과 그 회계자문사 간의 회계검토필 대차대조표 작성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의 처리

양수도대상 자산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이하 “본건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사전질의 제도에 따른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양수인은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수도금액을 기준으로, 본건 부가가치세를 법률상 납부시한 전에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당사자들은, 제 3.2 조에 따른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금 조정에 따라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양수도대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금액도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며, 그 정산 금액은 제 3.2 조 (e)항이 정한 날에 지급되어야 한다.

제15조 거래종결

제16조 거래종결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사업의 양수도 및 최초양수도대금의 지급(이하 “거래종결”)은, 제 6 조에 따른 선행조건의 충족(선행조건의 충족을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전제로, 2011 년 4 월 1 일(2011 년 4 월 1 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선행조건 충족일로부터 5 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장소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거래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거래종결일”이라 한다.

제17조 양도인의 거래종결시의 교부 및 이행사항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양수도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른 양도 방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수도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제반 권리를 어떠한 부담도 없는 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이를 위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전까지 양수도대상 자산, 이전대상 계약 및 승계대상 임직원의 양수도, 이전 및 승계와 관련하여 아래 예시적으로 열거된 서류를 포함하여, 양도인의 본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 증빙자료 또는 협력을 양수인에게 제공한다.

(a) 양수도대상 자산의 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

(b) (i) 에이스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ii)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에이스 주식에 관해 어떠한 부담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에이스 주식의 주주가 양수인임이 표시된, 에이스가 발급한 주주명부, (iii) KKK 지분의 양수도에 관한 중국의 관련 비준기관의 허가서, (iv)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KKK 지분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KKK가 발급한 주주명부, (v) 양수인이 KKK의 100% 주주로 등재되는 것으로 영업집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KKK 지분의 양수도에 관한 공상변경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단, (v)호의 경우 양도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함. 이하 같음.)

(c)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의 인허가 명의 변경 또는 신규 인허가 발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서 등 건설업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냉동기제조등록필증을 포함한다)

(d) 양수도대상 채권 기타 권리의 양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통지 및 승낙 모두 확정일자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e) 이전대상 계약의 원본, 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에 대한 해당 계약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또는 양도인, 양수인 및 해당 계약 상대방 사이에 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을 위하여 체결한 서면 경계 내지 변경계약(단,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형식 및 내용이어야 한다)

(f) 승계대상 임직원들의 70% 이상 및 필수승계대상 임직원들의 90%(각 유형별 필수승계대상 임직원의 90%를 의미함) 이상이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실질적으로 첨부 4.2(f)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확인서(단, 동 확인서의 구체적 내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함)

(g) 인수대상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관한 해당 채권자들의 서면 동의

(h) 양도인이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양수인이 수용하는, 첨부 4.2(h)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는 임시서비스제공계약

(i) 인수대상회사의 등기이사, 감사, 지배인(KKK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함)이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실질적으로 첨부 4.2(i)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사임서

(j) (i) 양도인에 의한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모두 정확하고 진실되며, (ii) 양도인이 거래종결 이전에 이행할 확약사항 기타 모든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으며, (iii) 양도인이 본건 거래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양도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동의, 통지, 인허가, 내부절차 기타 제 3 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동의 내지 승인(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요구되는 제 3 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동의 내지 승인은 제외됨)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내용과 형식의 양도인, 에이스 및 KKK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

(k) 거래종결일 당일 발급된, 양도인, 에이스 및 KKK를 관할하는 해당 정부기관이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KKK의 경우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함)

(l) 인수대상회사의 등기이사, 감사, 지배인(KKK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함)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으로서,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보수(퇴직금을 포함한다) 청구권을 포함하여 인수대상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m) KKK가 초상은행주식유한공사,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Standard Chartered Bank (China) Limited 및 수출입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것으로서, 해당 대출계약에 따라 본건 거래 또는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은행의 동의를 요하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으로 해당 은행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본건 거래 및 그에 따른 위 대출계약상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동의서

(n) 에이스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체결한 폐기물처리계약 및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증

(o) 양도인이 별지 4.2(o)에 기재된 해외 독점 distributor로부터 징구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양도인과 해당 해외 독점 distributor 간의 distribution 계약상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distributor는 그 독점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독점적인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의 확인서. 단, 당사자들은 제 7.1 조 (o)항에 따라 확인서 징구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p) KKK가 중국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한 오염물배출허가증

(q) KKK가 중국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한 통계등기증

(r) 기타 본건 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거나, 거래종결일에 양수인에게 전달되기로 본 계약상 예정되어 있는 서류 및 거래종결일 이전에 이행 또는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 양도인의 확약 또는 의무가 이행 또는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 양수인의 거래종결시의 교부 및 이행사항

양수인은, 양도인이 거래종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지정한 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종결일에 최초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양수인이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첨부 4.2(h)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는 임시서비스제공계약을 양도인에게 교부한다.

제19조 진술 및 보증

제20조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특정일을 명시하거나 특정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자 또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본 조 및 별지 5.1(g)(1) 및 별지 5.1(g)(2)에서 같다) 다음 사항들이 정확하고 진실함을 양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 (a) 양도인은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 (b) 양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회사로서의 능력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c) 양도인은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내부수권절차를 거쳤다.
- (d) 양도인은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은 양도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양도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 (e)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양도인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 양도인이 체결한 계약 및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f) 양도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정부인허가 또는 제 3자 동의를 거래종결일까지 모두 득하거나 완료하였다.
- (g) 이에 추가하여, 양도인은 본건 사업에 대하여 별지 5.1(g)(1), 인수대상회사에 대하여 별지 5.1(g)(2)와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제21조 양수인의 진술 및 보증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들이 정확하고 진실함을 양도인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 (a) 양수인은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 (b) 양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회사로서의 능력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c) 양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내부수권절차를 거쳤다.
- (d) 양수인은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은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양수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e)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양수인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 양수인이 체결한 주요 계약 및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진술 및 보증의 존속기간

제제 20 조조 및 제제 21 조조에 따른 양도인 및 양수인의 진술 및 보증은 원칙적으로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단,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중 (a) 제 5.1 조, 별지 5.1(g)(1)의 제 2 조(양수도대상 자산에 관한 권리 및 상태), 별지 5.1(g)(2)의 제 1 조(설립과 존속), 제 3 조(자본구조)에 기재된 사항은 각각 기간의 제한 없이 존속하고, (b) 별지 5.1(g)(1)의 제 7 조(법률위반), 제 12 조(환경, 안전 및 보건), 제 17 조(제품)에 기재된 사항, 별지 5.1(g)(2)의 제 9 조(법률위반), 제 10 조(부동산 기타 유형자산), 제 14 조(환경, 안전 및 보건), 제 20 조(제품)에 기재된 사항은 각각 해당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만료시로부터 30 일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c) 별지 5.1(g)(1)의 제 1 조(양수도대상 자산 등의 완전성)에 기재된 사항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존속하고, (d) 별지 5.1(g)(2)의 제 18 조(세금)에 기재된 사항은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에이스의 경우) 및 거래종결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는 날까지(KKK의 경우) 각각 존속하며, (e) 별지 5.1(g)(1)의 제 3.4 조(국고보조금 및 기술료) 및 별지 5.1(g)(2)의 제 5.7 조(국고보조금)에 기재된 사항은, 각 국책과제 별로, 해당 국책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양수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각 존속한다.

제23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제24조 양수인의 거래종결의무에 대한 선행조건

양수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는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사항들이 모두 충족(양수인이 다음 사항의 충족을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제제 20 조조, 별지 5.1(g)(1) 및 별지 5.1(g)(2)에 따른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특정일을 명시하거나 특정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자 또는 기간을 기준으로) 모두 정확하고 진실될 것.

(b)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확약, 의무 기타 약정사항(양수도대상 자산의 이전의무를 포함함)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c)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정부 인허가(한국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거주자간 지분양수도신고 수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하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는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및/또는 양수도대상 자산(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를 포함한다)의 이전 기타 본 계약상 의무 또는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제 3 자 동의(KKK가 초상은행주식유한공사,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Standard Chartered Bank (China) Limited 및 수출입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것으로서, 해당 대출계약에 따라 본건 거래 및/또는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은행의 동의를 요하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은행들이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으로 본건 거래 및 그에 따른 위 대출계약상 연대보증인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득하였을 것(단, 위 정부인허가 및 제 3 자 동의는 양도인이 취득하여야 하는 것에 한함).

(d)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또는 거래종결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절차가 개시될 우려가 없을 것.

(e) 본건 사업, 사업 전망, 재정 상태, 관련 자산, 재산 또는 영업 내지 거래종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f) 모든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의 명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거나, 양수인 명의로 신규 인허가가 발급되었을 것.

(g) 필수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양도인, 양수인 및 해당 계약의 상대방 사이에 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을 위하여 서면 경계 내지 변경계약(단,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형식 및 내용이어야 한다)이 체결되었을 것.

(h) 승계대상 임직원의 70% 및 필수승계대상 임직원의 90%(각 유형별 필수승계대상 임직원의 90%를 의미함)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첨부 4.2(f)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확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을 것.

(i) 양도인과 양도인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본건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을 것.

(j) 첨부 4.2(h)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는,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의 임시서비스제공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을 것.

(k) 양도인이 인수대상회사의 등기이사, 감사, 지배인(KKK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함)으로부터 각각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보수(퇴직금을 포함한다) 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징구하였을 것.

(l) 양도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로부터 동의서를 확보하였을 것.

(m) 양도인이 KKK로 하여금 중국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오염물배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을 것.

(n) 양도인이 KKK로 하여금 중국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계등기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을 것.

(o)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IT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고,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IT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을 것.

(p)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소방시설물을 유지 및 보수하였고,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소방시설물을 유지 및 보수하도록 하였을 것.

(q) (주)LG와 (주)LS 사이에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제25조 양도인의 거래종결의무에 대한 선행조건

양도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는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사항들이 모두 충족(양도인이 다음 사항의 충족을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제21 조조에 따른 양수인의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모두 정확하고 진실될 것.

(b)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확약, 의무 기타 약정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c)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정부 인허가(한국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거주자간 지분양수도신고 수리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 동의를 득하였을 것.

제26조 확약사항

제27조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a) 거래종결일까지, 양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i) 본건 사업을 과거 관행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특히,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별지 2.1에 기재된 자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별지 2.5(a)에 기재된 항목과 관련하여 그에 특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별지 2.5(a)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양도인이 어떠한 확약사항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양수도대금의 조정 기타 방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인은 해당 확약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과거 관행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ii) 본건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iii) 제20 조조, 별지 5.1(g)(1) 및 별지 5.1(g)(2)의 진술과 보증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래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그러한 거래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에 추가하여, 양도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i) 양도인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의 증감을 제외하고, 양수도대상 자산을 매각, 담보 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이에 부담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ii) 양도인은 양수도대상 자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iii) 양도인은 본건 사업 조직을 보전하고, 공급업체, 고객, 임직원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한다.

(iv) 양도인은 이전대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대상 계약을 해지, 해제하거나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v)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직전에 승계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 체결일 직전의 상태와 달리 임직원을 채용하거나, 승계대상 임직원을 이동, 배치, 승진시키거나, 그 급여를 조정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 체결일 직전에 승계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vi)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 확약, 의무 및 약정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본건 사업 또는 인수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단, 양수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그러한 시정행위만으로 그로 인한 양도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b)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양수인 및 양수인 임직원, 대리인 및 자문사에 대하여, 본건 사업 및 인수대상회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자료(양도인의 SAP-ERP를 포함한 IT 관련 시설, 그와 관련된 과거 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며, 양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 영업일 이전에 서면(이메일을 포함함)으로 통지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시간 내에 양도인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인 및 인수대상회사와 임직원과의 면담,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인은 본건 사업의 이전 등 본건 거래의 원활한 종결 및 양수인으로서의 본건 사업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기로 한다.

(c) 양도인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제 3자와 협상하거나, 계약, 약정 또는 논의를 유도, 개시, 장려 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아니한다.

(d) 당사자들은 거래종결일까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양도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하여 거주자간 지분양수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정부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e)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i) 모든 승계대상 임직원으로부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첨부 4.2(f)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확인서로서, 그 임직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ii) 필수승계대상 임직원으로부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첨부 4.2(f)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확인서로서, 그 임직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f)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양도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 본건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양도인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개시하기 3 영업일 전까지 협의 예정 내용을 양수인에게 통보하고, 협의 예정 내용에 대한 양수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g) 양도인은 별지 7.1(g)에 기재된 시점까지 동 별지에 기재된 정보 또는 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h) [의도적으로 생략됨.]

(i) 2006년 5월경 인도 원자력발전소용 냉동기 공급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중국 Wolverine사로부터 공급받은 티타늄 튜브의 하자로 인한 양도인의 Wolverine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양도인은 그 비용으로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항은 양도인이 Wolverine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j) 양도인은 인수대상회사의登記이사, 감사, 지배인(KKK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함)으로부터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보수(퇴직금을 포함한다) 청구권을 포함하여 인수대상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k)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늦어도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상 일간신문 등에 건설업 양도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l)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양도인이 KKK의 전 주주(들)로부터 KKK 지분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KKK의 전 주주(들)이 중국 관련 정부기관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서 또는 중국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를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m)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미확정 매입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거래종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부터는 부품이나 서비스의 주문 등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n)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에이스로 하여금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o) 당사자들은 거래종결일까지, 양도인이 별지 4.2(o)에 기재된 해외 독점 distributor로부터, 양수인이, 양도인과 해당 해외 독점 distributor 간의 distribution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독점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독점적인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거래종결일까지 위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p)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KKK로 하여금 중국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오염물배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q)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KKK로 하여금 중국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계등기증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r) 양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i) 모든 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에 대한 해당 계약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거나, 양도인, 양수인 및 해당 계약 상대방 사이에 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을 위하여 서면 경계 내지 변경계약(단,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형식 및 내용이어야 한다)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ii) 필수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에 대한 해당 계약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거나, 양도인, 양수인 및 해당 계약 상대방 사이에 필수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을 위하여 서면 경계 내지 변경계약(단,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형식 및 내용이어야 한다)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a)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이후 10 년 동안, 그 스스로, 그의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개인(들) 내지 그들의 동일인관련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정의된 의미를 가짐)(이하 통칭하여 “양도인측 경업금지의무자”. 본 조에서 양도인측 경업금지의무자는 양도인의 지배 하에 있는 자에 한함)로 하여금 또는 이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건 사업과 어떠한 방식(본인의 지위에서, 또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 파트너, 대리인, 자문역, 주주의 자격 또는 그 어떠한 지위 또는 자격이든 불문)으로든 국내외에서 경쟁하지 않거나 경쟁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양도인은 양도인측 경업금지의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i) 양도인측 경업금지의무자가 (x) 승계대상 임직원과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또는 (y) 승계대상 임직원으로 하여금 양수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양도인측 경업금지의무자와의 근로관계를 설정하도록, 종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단, 본 (i)호의 경우 본건 사업과 경쟁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함)

(ii) 본건 사업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지배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 또는 지원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들에 착수하는 행위, 혹은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지원, 조장 또는 독려하는 행위

(iii) 본건 사업 관련 대리점, 고객 기타 영업관계를 갖고 있는 제 3 자와의 거래관계를 해지 또는 종료하도록 종용하거나 유도 내지 방해하는 행위

(b) 양수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3 년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대상 임직원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거나, 그 근로조건을 거래종결일 직전의 그것보다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 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단, 확정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하여 거래종결일 이후 적용되는 고용조건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해당 임원 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하여 거래종결일 직전에 적용되던 고용조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되, 해당 임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수인의 고용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고용조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c) 첨부 4.2(h)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또는 그 이외에도 본건 사업을 본 계약 체결일 직전과 동일하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이후에라도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임시서비스사용계약을 개정하거나, 추가 임시서비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에 양수인이 그러한 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건 사업을 본 계약 체결일 직전과 동일하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도인이 거래종결일까지 양수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사항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거래종결일 이후에 새로운 임시서비스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그 관련 임시서비스사용계약의 목적물이 무상으로 양수인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d) 당사자들은 거래종결 후 즉시, 늦어도 제 7.1 조 (k)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에 관한 법정공고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정부기관에 건설업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e) 양수인은 양도인이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발생한 법률, 세무, 재무 또는 회계상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여, 비밀정보 내지 자료의 제공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비밀정보 내지 자료를 즉시 양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f) 양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른 KKK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중국 관련 정부기관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서 또는 중국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 소득세 면제를 승인 받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g) 양도인과 어떠한 해외 독점 distributor와의 distribution 계약이 이전대상 계약에서 제외되고, 양도인이 해외 독점 distributor에게 물품 공급 의무, 서비스 제공 의무, 기술 지원 의무 기타 해당 distribution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거래종결일 직전에 해당 distributor에게 공급하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인으로 하여금 거래종결일 이후 해당 distribution 계약상의 계약 기간 동안 해당 distributor에 대하여 동 계약상의 의무(단, 그 경우 동 계약은 독점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물품의 공급 대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

(h) 양도인은 거래종결일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이 KKK의 100% 주주로 등재되는 것으로 KKK에 대한 영업집조 변경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수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기절차에 협조하고 KKK로 하여금 동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i) 양수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7.2(i)에 열거된 협력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해당 협력업체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단, 본 조항은 양수인이 위 협력업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인 및 위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j) 양도인은 거래종결 즉시, 늦어도 거래종결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본건 사업 또는 인수대상회사와 관련된 비밀정보 내지 자료를,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폐기하거나 이를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ERP 자료 및 전표 자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제공 또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자료 중 고객, 제품 및 가격 관련 정보는 그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폐기하거나 이를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해제

제30조 해제사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단, 본 계약은 본 계약상 달리 규정되지 않는 이상 거래종결일 이후에는(단, 본 조 제(d)항은 예외로 함) 해제 또는 원상회복되지 못한다.

(a) 당사자 일방(이하 “**위반당사자**”)이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보증, 약속, 의무 기타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이하 “**비위반당사자**”)으로부터 위반의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비위반당사자의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b)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 해산, 청산, 채무자 회생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고, 그러한 절차가 개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해당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c)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0 일이 되는 날까지 거래종결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단,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하여 위 90 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거래종결일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KKK에 대한 영업집조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이 경우 본 계약 중 해제되는 부분은 KKK 지분의 양수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당사자들은 양수인이 위 서면 통지를 한 즉시(늦어도 통지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상호 합의하여 선정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KKK 지분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양수도대금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위 회계법인 관련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함). 양도인은 위 회계법인이 KKK 지분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산정한 때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와 같이 산정된 양수도대금 및 이에 대한 거래종결일부터 연 6%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KKK에 대한 영업집조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선택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이외의 방안을 양도인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당사자들은 그 방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제의 효과

(a)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은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는 모두 소멸한다. 단, 제 29 조, 제 32 조에 따른 권리, 의무 기타 그 성격상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존속하여야 하는 권리,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계약의 해제는 제 32 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 기타 해제 이전에 발생한 본 계약상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본 계약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제 8.1 조 (a)항에 따라 해제된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2년간 스스로 또는 그 지배 하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승계대상 임직원으로 하여금 양도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양수인 또는 그 계열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설정하도록, 종용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렇게 종용하거나 유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승계대상 임직원의 자발적인 퇴사 및 입사는 본 조항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c) 본 계약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제 8.1 조 (a)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은 본건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자료, 정보 및 노하우를 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자료, 정보 또는 노하우가 (i)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되기 전에 양수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 또는 (ii) 양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개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 공중이나 양수인에게 알려져 있었거나 또는 알려지게 된

것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양수인이 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료, 정보 및 노하우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 배상

제33조 배상의무

당사자 일방(이하 “**배상당사자**”)이 (a)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거나, (b) 본 계약상 확약, 의무 기타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 그 임직원, 주주, 대리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각 임직원, 주주 및 대리인(통칭하여 이하 “**피배상당사자**”)에게 손해, 손실, 부담 또는 비용(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손해**”)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종결일 이후 양수도제외 자산 또는 인수제외 채무와 관련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측 피배상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양수인이 그 위반 사유 또는 원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양도인이 귀책사유 없이, (i) 필수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에 대한 해당 계약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ii) 양도인, 양수인 및 해당 계약 상대방 사이에 필수이전대상 계약의 이전을 위하여 서면 경계 내지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지 못한 경우, 또는 (iii) 필수승계대상 임직원으로부터 제 7.1 조 (e)항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양도인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사항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및 보증사항과 관련한 “중요한”, “중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그와 유사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배상의무기간

제제 22 조조에 따른 진술 및 보증의 존속기간이 당사자 일방의 어떠한 진술 및 보증 위반 없이 종료한 경우, 그 당사자는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제제 33 조조 (a)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진술 및 보증의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이미 발생하거나 시작되었고, 피배상당사자가 해당 진술 및 보증의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배상청구에 관한 서면통지를 배상당사자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진술 및 보증의 존속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는 제제 33 조조 (a)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9.1 조 (b)항에 따른 확약, 의무 기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본 조항에 따른 배상의무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손해배상의 제한

(a)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술 및 보증 위반(제 9.1 조 (a)항)으로 입은 손해액의 합계(산정시 진술 및 보증 기간 경과를 불문하고 손해를 합산하고, 제 9.6 조 관련 손해액을 합산함)가 최종 양수도대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저배상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위 손해액의 합계가 최저배상금액을 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최저배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술 및 보증 위반(제 9.1 조 (a)항)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최종양수도대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c)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배상당사자는 손해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당사자는 그러한 증가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제36조 제 3 자의 청구

(a) 피배상당사자에 대하여 제 3 자가 청구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배상당사자가 피배상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배상당사자는 즉시 그러한 점을 배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 청구와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지체없이 배상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피배상당사자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당사자는 그러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배상당사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한 피배상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로부터 면제 되지 않는다.

(b) 배상당사자는 피배상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i) 해당 청구를 직접 방어하거나, (ii) 방어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단, 배상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 기타 자문사를 선임하고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배상당사자가 해당 청구를 방어하거나 방어하는데 참여하기로 한 경우, 피배상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 기타 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방어의 방법에 관하여 배상당사자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피배상당사자는 배상당사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배상당사자가 합의, 화해(합의 및 화해의 경우 재판상 및 재판외 것을 불문함) 또는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배상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해당 청구를 방어하거나 방어하는데 참여함에 있어 다른 당사자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c) 배상당사자가 피배상당사자로부터 본 조 (a)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피배상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어하지 않거나 방어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는 경우, 피배상당사자는 제 3 자의

청구를 직접 방어하며, 배상당사자의 동의 또는 그에 대한 통지 없이 위 청구에서 화해 또는 조정을 할 수 있고, 배상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 특별배상

(a) 제 9.5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상 상반되는 어떠한 조항 및 공개목록에서 공개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수인의 모든 손해를 본 계약상 또는 관련 법령상 손해배상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적용을 받음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i)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 에이스 및/또는 KKK가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GHP 제품 중, 유상하자보수 대상인 제품과 관련하여,

(x) 제 3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y) 제 3 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소송 등으로 주장하거나; 또는

(z)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기관이 명령 또는 권고하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ii) KKK가 거래종결일 이전에 토지 출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토지를 출양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

(iii) LSAQ가 2004 년 10 월경 및 2006 년 4 월경 그 대리점인 하얼빈다위에 판매한 상용에어컨과 관련하여 하얼빈다위가 2009 년 8 월경 하얼빈 법원에 KKK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 및 대금반환 청구소송.

(iv) 양도인이 거래종결일 이전에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IT 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또는 권원 없이 사용하거나, 인수대상회사가 IT 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또는 권원 없이 사용한 것.

(b) 제 9.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9.5 조 (a)항 각 호와 관련된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특별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아래 규정된 시점 이전에 해당 사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존재하고, 양수인이 그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아래 규정된 시점 이전에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양도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가능하다.

(i) 위 (i)(x)호의 경우 거래종결일부터 7년이 되는 날.

(ii) 위 (i)(y)호 또는 위 (i)(z)호의 경우 각각 거래종결일부터 5년이 되는 날.

(iii) 위 (ii)호의 경우 출양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

(iv) 위 (iii)호의 경우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v) 위 (iv)호의 경우 거래종결일부터 5년이 되는 날.

(c) 본 조항 (i)(x)호에 따라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 에이스 및/또는 KKK가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GHP 제품 중 유상하자보수 대상인 제품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양수인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은 손해액의 합계(산정시 제 9.1 조 (a)항 관련 손해액은 제외함)가 최저배상금액 이하인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손해액의 합계가 최저배상금액을 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최저배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제한은 본 조항 (i)(x)호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본 조항 (i)(y)호, (i)(z)호, (ii)호, (iii)호, (iv)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 에이스 및/또는 KKK가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GHP 제품 중 유상하자보수 대상인 제품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양수인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한 경우(본 조항 (i)(x)호의 경우)에도, 그와 관련하여, 제 3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소송 등으로 주장하여 양수인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한 경우(본 조항 (i)(y)호의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기관이 명령 또는 권고하여 양수인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한 경우(본 조항 (i)(z)호의 경우), 그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본 제 9.5 조 (c)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d) 제 9.3 조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 (a)항 각 호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배상 받는 각 사유별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각각 아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 위 (i)호의 경우 최종 양수도대금의 15%.

(ii) 위 (ii)호의 경우 10억 원.

(iii) 위 (iii)호의 경우 5 억 원.

(iv) 위 (iv)호의 경우 8 억 원.

(e) 제 9.5 조 (a)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양수인 또는 인수대상회사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본 조항은 양수인 또는 인수대상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수인 또는 인수대상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조항상 자발적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GHP 제품 관련 손해배상

(a) 양도인은, 별지 9.6 기재 제품을 포함하여,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 에이스 및/또는 KKK가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GHP 제품 중,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제품의 경우, 그 하자 또는 결함에 따라,

(i) 제 3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ii) 제 3 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소송 등으로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iii)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기관이 명령 또는 권고하고, 그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비자발적으로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또는

(iv) 거래종결일 이후에, 동일한 부품에서의 불량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동일한 증상의 불량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로서, 양수인이 관련 제품,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불량 또는 증상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를 시정하는 경우(단, 양수인은 그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수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항상의 손해액 산정시 하자보수충당금(및 하자관련비용)과 매출채권충당금(및 미회수채권액)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b) 본 조항에 따른 양수인의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거래종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발생하거나 시작되었고, 양수인이 거래종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배상청구에 관한 서면통지를 양도인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거래종결일부터 2 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본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c) 양수인이 제 9.6 조 (a)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배상받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별지 9.6 기재 제품을 포함하여 양도인 및 인수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 전에 직접 제조 후 판매한 GHP 제품 중 무상하자보증 기간 내에 있는 제품의 국내 실외기 매출총액의 1/2 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제한과 제 9.3 조 (b)항 및 제 9.5 조 (d)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이를 각각 별개로 본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진술 및 보증 위반, 특별배상 및 위 GHP 실외기 제품과 관련하여 양도인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최종양수도대금의 20%(제 9.3 조 (b)항), 각 특별배상사유 별 손해배상총액을 합산한 금액(제 9.5 조 (d)항) 및 위 GHP 제품 중 무상하자보증 기간 내에 있는 제품의 국내 실외기 매출총액의 1/2(본 조항)을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 Break-up Fee의 지급

(a) 양수인은,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 양도인에게 최초양수도대금의 3% 상당의 금원을 break-up fee(명확히 하면, 제 9.7 조 (a)항의 break-up fee는 본 계약상 양수인의 다른 의무 또는 확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위약벌이 아니며, 해약권의 유보로 해석되지 아니함)로 지급한다.

(i) 제 6 조에 따른 선행조건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i) 양수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하지 아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단, 양도인이 그 이전에 본건 거래를 종결하지 아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양수인이 위와 같이 결정함에 있어서 양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양도인은,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 양수인에게 최초양수도대금의 3% 상당의 금원을 break-up fee(명확히 하면, 제 9.7 조 (b)항의 break-up fee는 본 계약상 양도인의 다른 의무 또는 확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위약벌이 아니며, 해약권의 유보로 해석되지 아니함)로 지급한다.

(i) 제 6 조에 따른 선행조건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i) 양도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하지 아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단, 양수인이 그 이전에 본건 거래를 종결하지 아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양도인이 위와 같이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기타

제41조 통지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와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i) 등기우편 또는 수령확인증이 송부되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송부된 것을 수령한 경우 또는 (ii) 인편 또는 인지도가 있는 상업서류 송달회사에 의해 전달된 경우에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각각의 경우 다음에 기재된 주소(혹은 통지 등에 의해 지정되는 기타 주소)의 적합한 수신인에게 보내져야 한다.

- (a) 양도인: AAA 주식회사
주소: (주소 비공개)
참조: 전략기획부문장 ○○○
전화번호: (연락처 비공개)

- (b) 양수인: LLL 주식회사
주소: (주소 비공개)
참조: AE사업본부 경영전략팀장 ○○○
전화번호: (연락처 비공개)

제42조 비밀유지

(a) 각 당사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및 본 계약의 존재와 그 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그 주주, 계열회사, 그 각각의 임직원, 대리인, 자문사로 하여금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 본 계약의 존재 또는 그 조건을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히 양도인은 거래종결 후 본건 사업, 에이스 및 KKK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 3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b)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여하한 형태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 컴퓨터 파일 및 기타 기록매체 또는 유형물을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 계약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또는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4조 수정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 없이는 수정되지 아니한다.

제45조 완전합의

본 계약은 본건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서면 및/또는 구두의 모든 사전 합의와 양해를 대체한다.

제46조 분리가능성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어떠한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구속력이 없을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의 유효성 및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 비용 및 세금

(a)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기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에게 부과 혹은 초래되었거나 발생한 일체의 비용, 경비 및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b) 양수도대상 자산에 대하여 거래종결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또는 실제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조세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c) 양수도대상 자산에 관한 수도세, 하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전화비 및 기타 공공서비스 요금은, 거래종결일 직전일 까지 발생한 것은 양도인이, 거래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관련 증빙에 따라 이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48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49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합의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이하 여백]

이상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본 계약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였다.

AAA 주식회사

LLL 주식회사

성명: ○○○
직책: 대표이사

성명: ○○○
직책: AE 사업본부장

별지 1.1

기준 순자산액 및 목표 운전자본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별지 2.1(a)

양수도대상 건구축물

별지 2.1(b)

양수도대상 부동산 관련 권리

별지 2.1(c)

양수도대상 유무형자산

별지 2.1(d)

양수도대상 재고자산

별지 2.1(e)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

별지 2.1(f)

양수도대상 유가증권

별지 2.1(g)

양수도대상 영업권 등 및 고객관계

별지 2.1(h)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

별지 2.1(i)

양수도대상 채권 기타 권리

별지 2.1(j)
수계대상 소송

별지 2.1(k)

양수도대상 보험

별지 2.1(1)

양수도대상 예금, 현금, 현금등가물

별지 2.2
양수도제외 자산

별지 2.3(a)

이전대상 계약

별지 2.3(b)

필수이전대상 계약

별지 2.4(a)

승계대상 임직원

별지 2.5(a)

인수대상 채무

별지 3.2(f)

거래종결 후 양수도대금 조정 절차 및 방법

별지 4.2(o)

해외 독점 distributor의 목록

국가	업체정보
INDONESIA	PT. LINE SOLUSI SUKSES MANDIRI(독점)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District Cooling Company(DCC)(독점)

별지 5.1(g)(1)

본건 사업에 대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본 계약 제20 조조에 따른 진술 및 보증에 추가하여,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다음 사항들이 정확하고 진실한 것임을 양수인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별지 5.1(g)(1)은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은 별지 5.1(g)(2)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 양수도대상 자산 등의 완전성: 양수도대상 자산, 이전대상 계약, 승계대상 임직원은 본건 사업을 현재 및 향후 현재와 같은 상태 및 수준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자산(양수도제외 자산은 그러한 필요한 자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계약, 임직원을 구성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별지 2.1 기재 양수도대상 자산은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그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별지 2.5(a) 기재 인수대상 채무는 거래종결일 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그에 특정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양수도대상 자산에 관한 권리 및 상태: 양도인은 양수도대상 자산의 적법한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며, 이를 방해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거래종결일 현재 양수도대상 자산에는 어떠한 형태의 부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수도대상 자산은 그 사용연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사업을 위한 사용에 적절한 상태로 유지 및 보수되어 왔다.
3.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상태
 - 3.1 재무제표: 공개목록 3.1 에 첨부된 2010 년 9 월 30 일 기준 본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이하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는 관련 법령 및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본건 사업의 재무상태 및 현황을 그 작성일자 및 작성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 3.2 미투입원가: 외상매입금 내 미투입원가는 투입재료비를 고려하여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에 적정하게 설정, 반영되었다.
 - 3.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양도인의 본건 사업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에 적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내역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였고, 그러한 자료 및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며, 그러한 자료 및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이 없다.

- 3.4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에 정확하고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의무가 발생할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국책과제의 과제 현황, 기간, 기존 또는 장래 유입예정 국고보조금(관련 계정 및 금액), 기술료납부예정금액 등의 현황 및 그 관련 사실은 공개목록 3.4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단, 장래의 국고보조금유입액 및 기술료납부예정액 현황에 관한 본 진술 및 보증은 양수인이 거래종결일 이후 해당 국책과제를 양도인이 체결한 관련 국책과제 협약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책과제의 수행을 종료한 이후 양수인이 공개목록 3.4에 기재된 기술료를 정부기관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거래종결일 이후 양수인에게 이전된 국책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그 사업적 판단에 의해 협약 내용과 다르게 국책과제를 수행하거나, 과제의 조기 종료, 중단 또는 기술료의 납부 지연 등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 금액이 공개목록 3.4에 기재된 금액보다 증액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국고보조금 유입액 및 기술료납부예정액 현황에 관한 본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3.5 하자보수충당금 및 매출채권충당금: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 및 미회수 매출채권액은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에 반영된 하자보수충당금 및 매출채권충당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자보수충당금(및 하자관련비용)과 매출채권충당금(및 미회수채권액)을 합산한다.
4. 변경사항의 부존재: 2010년 9월 30일 이래 본건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은 없다. 2010년 9월 30일 이래 양도인은 본건 거래에서 예정된 행위를 제외하고, (i) 본건 사업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ii) 본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iii) 본건 사업 관련 주요 거래업체, 고객 및 기타 사람과의 관계 및 영업권을 유지, 보전하였고, (iv) 본건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 영향 또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v) 본 별지 5.1(g)(1)의 진술과 보증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래나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계약

5.1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약(이전대상 계약을 포함한다)의 사본 및 그 계약 조건은 양수인에게 모두 제공 (양수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것을 포함함)되었다.

“주요계약”이라 함은, 본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구두 또는 서면 기타 여하한 형태의 계약 또는 약정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필수이전대상 계약 및 다음 계약을 포함한다.

- (i)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금액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이 일회성의 계약인 경우에는 합계 100,000,000 원
- (ii) 계약기간(본 조항의 목적상, 해당 계약상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1년 이상인 계약
- (iii)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주, 임직원,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체결한 계약
- (iv) 본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수도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또는 그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해지 또는 계약변경권을 부여하는 계약
- (v) 본건 사업을 사업범위, 지역별 또는 기타 측면에서 제한하는 계약
- (vi)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양수도, 포기 기타 처분과 관련된 계약;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여하한 부담의 설정 또는 실시권의 허락과 관련된 계약; 허여받은 실시권에 대한 변경, 포기 기타 처분과 관련된 계약
- (vii)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여하한 금융계약(여신계약, 대출계약, 담보설정계약, 양도인을 위하여 제 3 자가 제공한 담보나 보증에 관한 계약 등을 포함한다)
- (viii) 구매물량 보증이 포함된 계약

5.2 주요계약 등과 관련하여,

- (i) 각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양도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이를 무효로 하거나 그에 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조건이 향후 수정, 변경, 취소될 수 있는 내용 또는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도인은 각 계약상의 권리를 완전하고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 (ii) 양도인은 각 계약을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한 바 없으며, 각 계약상 양도인의 채무불이행(본건 거래로 인하거나 기타 통지의 발송이나 소정 시간의 경과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인정될 만한 사건이나

행위가 없다. 그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수인, 본건 거래 및 본건 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본다.

- (iii)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이를 위반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iv) 양도인은 각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계약의 해제, 해지, 기간연장의 거부, 계약조건 변경의 요구, 계약상 의무이행의 거부 및 의무이행지체의 통지를 받거나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 받은 바가 없다.
- (v) 이전대상 계약은 본건 사업을 현재 및 향후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계약을 구성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

6. 분쟁: 공개목록 6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또는 그 임직원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을 대리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그 임직원을 상대로, 계류 중인 분쟁은 없으며,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분쟁이 개시될 우려도 없다.

7. 법률 위반: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이를 위반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사실이 주장되거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바 없다.

8.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

8.1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a) 양도인은 모든 임대차계약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고, (b)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차임 기타 금원은 각각의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되었고, (c) 양도인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불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d)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임대차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된 바 없다.

8.2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목록 8.2에 기재된 건설 중인 건축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여하한 관련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건축의 사유가 없다.

9. 지적재산권

9.1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은 공개목록 9.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양도인은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에 관해 단독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

- 9.2 양도인은 공개목록 9.2에 기재한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에 관해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해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지적재산권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 3자(양도인의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양도인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9.3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 3 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내역 및 그에 관한 약정(실시료, 계약기간, 상대방 등)의 내역은 공개목록 9.3에 기재된 바와 같다.
- 9.4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수령한 바 없다. 공개목록 9.2 및 공개목록 9.3에 기재된 지적재산권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발명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해당 발명자에게 양도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였다. 단, 해당 발명자가 승계대상 임직원이 아닌 경우, 양도인은 해당 발명자에게 양도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 3 자 역시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9.5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 또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제 3 자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당사자로 계류 중인 분쟁은 없고,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분쟁이 개시될 우려도 없다.
10. 정부인허가: 공개목록 10에는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부인허가(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를 포함한다)의 정확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는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하다.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는 본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중요 정부인허가를 포함한다. 양도인은 양수도대상 정부인허가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있고 그 취소나 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행위 또는 사실이 주장되고 있지 아니하다.
11. 노동문제: 양도인은 승계대상 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모두 양수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주요조건은 공개목록 11.1에 기재된 바와 같다. 공개목록 11.2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 9월 30일 이래 승계대상 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직급 및 직무변경, 복지조건 변경, 재배치 등 포함)에 관해 변경된 사항은 없었다.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공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임금 기타 이익의 제공에 관하여 본건 사업에 필요하거나 본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임직원 또는 노동조합에게 약속 또는 보증을 하거나 그러한 임직원 또는 노동조합과 이를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임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 보수의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상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며, 미지급된 보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하여 왔으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 왔다. 현재 본건 사업과 관련한 노동 관련 분쟁은 없으며, 그러한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승계대상 임직원은 본건 사업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필요충분한 임직원을 구성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총 208 명이며, 승계대상임직원 외에 양도인에게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용의무가 있거나 그러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제 3 자는 없다.

12. 환경, 안전 및 보건: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및 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양도인이 사용 중인 토지 또는 그 주변에 유출, 누출, 방출, 발산, 주입, 투기 또는 투하한 바 없다.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관련 정부인허가 또는 환경,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처벌, 제재, 시정요구 또는 배상요구를 받은 바 없다. 양도인은 관련 법령상 본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안전, 보건 관련 정부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어떠한 정부기관도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중인 토지와 관련된 오염을 제거하거나 조사하거나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인들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또한 어떠한 정부기관도 양도인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양도인의 임직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분쟁은 없고, 양도인들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분쟁이 개시될 우려도 없다. 시기를 불문하고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 점유 기타 방법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기타 자산과 관련하여, 제반 환경 관련 정부인허가 및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양도인이 잠재적 또는 현실적으로 오염물의 제거, 매립, 정화, 손해배상, 금전보상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13. 장부 및 기록: 본건 사업과 관련한 양도인의 장부 기타 기록(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고 유지되었다.

14. 보험: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주요 보험(양수도대상 보험을 포함한다)의 목록은 공개목록 14에 기재된 바와 같다. 양수도대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현재 유효하다. 양수도대상 보험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거나, 본건 사업과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체결하거나 필요로 하는 일체의 보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보험의 해지 또는 취소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바 없다.
15. 유가증권, 담보, 보증 등: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하고, 양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 기타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개목록 15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 또는 보증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
16. [의도적으로 생략됨.]
17. 제품: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이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본건 사업 관련 제품은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부합하게 제조, 공사 또는 판매되었고, 그에 관련된 하자 또는 결함에 관하여 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자 또는 결함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관련 정부기관에서 또는 법령에 따라 리콜을 권고, 명령한 바 없고, 그러한 리콜 사유도 없다. 공개목록 17은 양도인이 하자보수의무(명시적인 것인지 여부 및 서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양도인이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본건 사업 관련 제품이다. 양도인은 그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제 3 자가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본건 사업 기준재무제표상으로 하자보수충당금도 충분히 계상되어 있다.
18. 도산사유 등의 부존재: 본건 거래는 양도인의 채권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본건 거래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이 문제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건 거래로 인하여 양도인의 채무초과, 해산, 청산, 파산 기타 양도인의 영업 폐지가 초래되지 아니한다.
19. 임시서비스 관련: 첨부 4.2(h)에 기재된 내용은 양수인이 거래종결일 이후에 본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과거의 수준과 동일한 비용으로,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하고

충분한 용역 또는 거래를 구성하거나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재 내용은 모두 정확하다.

20. 정보제공: 양도인은 본건 사업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였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진실만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자료 및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이 없다.

별지 5.1(g)(1)에 대한 공개목록

별지 5.1(g)(2)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본 계약 제제 20 조조에 따른 진술 및 보증에 추가하여, 양도인은 인수대상회사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다음 사항들이 정확하고 진실한 것임을 양수인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한다.

1. 설립 및 존속: 인수대상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인수대상회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그 자산을 소유 및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고, 그에 필요한 법적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인수대상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해산 또는 청산사유나 파산, 채무자회생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KKK의 분공사 및 판사처는 중국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그 인허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위반사항의 부존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i) 인수대상회사의 정관 기타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ii) 인수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정부인허가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iii) 인수대상회사가 당사자이거나 인수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iv) 인수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그 자산에 부담을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며, (v) 그 밖에 인수대상회사에 대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3. 자본구조
 - 3.1 에이스의 납입자본금은 총 금 1,000,000,000 원이고, 에이스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는 액면금 5,000 원의 보통주식 400,000 주이며, 현재 보통주식 200,000 주가 발행되어 있고, 이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며, 전부 납입되었다. KKK의 투자총액은 미화 25,000,000 달러이고, 등록자본금은 미화 10,000,000 달러이며, 양도인은 KKK에 등록자본금 전액을 적법하게 납입하였다.
 - 3.2 인수대상회사는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기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 또는 신주 발행 의무가 수반되는 주식연계증권, 사채 또는 기타 권리나 증서를 발행하거나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발행하거나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 3.3 에이스 주식 및 KKK 지분은 그 발행주식 또는 지분 전체에 해당하고, 양도인은

이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에이스 주식 또는 KKK 지분에 관하여 여하한 부담도 없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의결권계약, 주주간계약, 의결권신탁계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정관 및 관련 서류: 인수대상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과 회사 관련 각종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고 관리되어 왔다.
5.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상태
 - 5.1 재무제표: 공개목록 5.1에 첨부된 인수대상회사의 2008년 12월 31일, 2009년 12월 31일 및 2010년 9월 30일 기준 각 재무제표(이하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인수대상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그 작성일자 및 작성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 5.2 미공개채무/우발채무의 부존재: (i)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 중 최종일의 것에 반영된 채무, (ii) 2010년 9월 30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하여 인수대상회사의 장부에 반영된 채무를 제외하고, 인수대상회사에는 여하한 추가적인 채무, 책임 또는 의무(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 포함)가 없다. 또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직, 간접적인 보증 또는 담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5.3 정부 우대조치: KKK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대조치는 적법하고, 그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반환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다.
 - 5.4 미투입원가: 외상매입금 내 미투입원가는 투입재료비를 고려하여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에 적정하게 설정되었다.
 - 5.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인수대상회사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관련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에 적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 5.6 하자보수충당금 및 매출채권충당금: 인수대상회사에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 및 미회수 매출채권액은 각각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에 반영된 하자보수충당금(해당되는 경우) 및 매출채권충당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자보수충당금(및 하자관련비용. 하자보수충당금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과 매출채권충당금(및 미회수채권액)을 합산한다.

5.7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 중 에이스 부분에 정확하고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의무가 발생할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국책과제의 과제 현황, 기간, 기존 또는 장래 유입예정 국고보조금(관련 계정 및 금액), 기술료납부예정금액 등의 현황 및 그 관련 사실은 공개목록 5.7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단, 장래의 국고보조금유입액 및 기술료납부예정액 현황에 관한 본 진술 및 보증은 에이스가 거래종결일 이후 해당 국책과제를 에이스가 체결한 관련 국책과제 협약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책과제의 수행을 종료한 이후 에이스가 공개목록 5.7에 기재된 기술료를 정부기관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거래종결일 이후 에이스가 국책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사업적 판단에 의해 협약 내용과 다르게 국책과제를 수행하거나, 과제의 조기 종료, 중단 또는 기술료의 납부 지연 등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 금액이 공개목록 5.7에 기재된 금액보다 증액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국고보조금 유입액 및 기술료납부예정액 현황에 관한 본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변경사항의 부존재: 2010년 9월 30일 이후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변경은 없다. 2010년 9월 30일 이후 양도인은 본건 거래에서 예정된 행위를 제외하고, (i)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ii)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영업과정에서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iii) 인수대상회사의 주요 거래업체, 고객 및 기타 사람과의 관계 및 영업권을 유지, 보전하도록 하였고, (iv)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중대한 부정적 변경, 영향 또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v) 본 별지 5.1(g)(2)의 진술과 보증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래나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 계약

7.1 2010. 9. 30. 기준으로 인수대상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거나 인수대상회사를 구속하는 모든 계약의 사본 및 그 계약 조건은 양수인에게 모두 제공(양수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것을 포함함)되었다.

“주요계약”이라 함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 부채, 재무상태, 영업 및 기타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구두 또는 서면 기타 여하한 형태의 계약 또는 약정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계약을 포함한다.

- (i)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금액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이 일회성의 계약인 경우에는 합계 50,000,000 원
- (ii) 계약기간(본 조항의 목적상, 해당 계약상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6 개월 이상인 계약
- (iii) 인수대상회사의 주주, 임직원,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체결한 계약
- (iv) 인수대상회사의 경영권 또는 과반수 주주가 변동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또는 그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해지 또는 계약변경권을 부여하는 계약
- (v) 인수대상회사의 영업활동을 사업범위, 지역별 또는 기타 측면에서 제한하는 계약
- (vi) 지적재산권의 양수도, 포기 기타 처분과 관련된 계약; 지적재산권에 대한 여하한 부담의 설정 또는 실시권의 허락과 관련된 계약; 허여받은 실시권에 대한 변경, 포기 기타 처분과 관련된 계약
- (vii) 인수대상회사가 체결하였거나 관련된 여하한 금융계약(여신계약, 대출계약, 담보설정계약, 인수대상회사를 위하여 제 3 자가 제공한 담보나 보증에 관한 계약 등을 포함한다)
- (viii) 구매물량 보증이 포함된 계약

7.2 주요계약과 관련하여,

- (i) 각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인수대상회사 및 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이를 무효로 하거나 그에 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조건이 수정, 변경, 취소될 수 있는 내용 또는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수대상회사는 각 계약상의 권리를 완전하고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 (ii) 인수대상회사는 각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바 없으며, 각 계약상 인수대상회사의 채무불이행(본건 거래로 인하거나 기타 통지의 발송이나 소정 시간의 경과로 인수대상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인정될 만한 사건이나 행위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수인, 본건 거래 및 본건 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iii)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각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이를 위반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iv) 인수대상회사는 각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계약의 해제, 해지, 기간연장의 거부, 계약조건 변경의 요구, 계약상 의무이행의 거부 및 의무이행지체의 통지를 받거나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 받은 바가 없다.

8. 분쟁: 공개목록 8 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수대상회사를 상대로, 또는 그

임직원이 인수대상회사를 대리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그 임직원을 상대로, 계류중인 분쟁은 없으며,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분쟁이 개시될 우려도 없다.

9. 법률 위반: 인수대상회사는 회사나 그 사업, 계약 또는 자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이를 위반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사실이 주장되거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바 없다.

10.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

- 10.1 인수대상회사가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은 인수대상회사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거나, 인수대상회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소유권 및 사용권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KKK는 최저 토지출양가격 이상으로 토지를 출양받았으며, 적법한 중국 정부기관과 체결한 출양계약에 따라 토지 출양 대금을 완납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추가 납입의무 또는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KKK는 그 출양받은 토지를 출양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몰수 또는 회수 당하거나, 반환해야 할 여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러할 우려도 없다. 인수대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에는 여하한 부담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인수대상회사가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은 그 사용연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태로 유지 및 보수되어 왔다. 인수대상회사가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은 그 사업을 현재 및 향후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자산을 구성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그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았다.

- 10.2 인수대상회사(특히 KKK의 분공사 및 판사처, 이하 본 조항에서 같다)가 임차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a) 인수대상회사는 모든 임대차계약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고, (b)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차임 기타 금원은 각각의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되었고, (c) 인수대상회사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불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d)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임대차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된 바 없고, (e) 인수대상회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목적물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임차 사용하고 있다.

- 10.3 KKK는 적법한 인허가를 받아 공개목록 10.3 에 기재된 건설 중인 건축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모두 완납하였고, 여하한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건축의 사유가 없다.

11. 지적재산권

11.1 인수대상회사가 현재 또는 향후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은 공개목록 11.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인수대상회사는 그에 관해 단독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

11.2 인수대상회사는 공개목록 11.2에 기재한 지적재산권에 관해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해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지적재산권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 3자(인수대상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인수대상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1.3 인수대상회사가 제 3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내역 및 그에 관한 약정(실시료, 계약기간, 상대방 등)의 내역은 공개목록 11.3에 기재된 바와 같다.

11.4 인수대상회사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인수대상회사가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수령한 바 없다. 인수대상회사는 직무발명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내부 규정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준수하고 있다. 공개목록 11.2 및 11.3에 기재된 지적재산권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수대상회사는 발명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해당 발명자에게 인수대상회사의 직무발명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였다. 제 3자 역시 인수대상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 인수대상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11.5 인수대상회사의 지적재산권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인수대상회사가 당사자로 계류 중인 분쟁은 없고, 그러한 분쟁이 개시될 우려도 없다.

12. 정부인허가: 공개목록 12에는 인수대상회사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부인허가(각종 신고, 신청, 등록, 등기 등 포함)의 정확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개목록 12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수대상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정부인허가는 없다. 위 정부인허가는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하다. 위 정부인허가는 인수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중요 정부인허가를 포함한다. 인수대상회사는 위 정부인허가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있고 그 취소나 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행위 또는 사실이 주장되고 있지 아니하다.

13. 노동문제: 양도인은 인수대상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근로조건을 모두 양수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주요조건은 공개목록 13.1에 기재된 바와 같다. 공개목록 13.2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 9월 30일 이래 인수대상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근로조건(직급 및 직무변경, 복지조건 변경, 재배치 등 포함)에 관해 변경된 사항은 없다. 인수대상회사는 노동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KKK는 그 모든 임직원들과 서면으로 중국 법령에 부합하게 작성된 노동계약을 체결하였고 필요한 신고나 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인수대상회사는 양수인에게 제공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임금 기타 이익의 제공에 관하여 임직원 또는 노동조합에게 약속 또는 보증을 하거나 임직원 또는 노동조합과 이를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인수대상회사의 임직원이 그러한 임금 기타 이익의 제공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임직원에게 대한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 보수의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상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며, 미지급된 보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KKK는 그 분공사나 판사처의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위하여 적법하게 사회보장보험(주택공적금 포함)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비 또는 관련 비용을 적시에 완납하였다. 인수대상회사는 적법하게 장애인을 고용하였고 필요한 부담금 등을 납부하였다. 인수대상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하여 왔으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이스에 한함) 또는 그와 유사한 충당 재원을 적립하여 왔다. KKK에는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확정되었으나 미지급된 경제보상금이 없다. 현재 인수대상회사에 노동 관련 분쟁은 없으며,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에이스와 KKK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2011년 2월 28일 기준으로 각각 41명(비정규직 및 승계대상 임직원 제외) 및 421명(승계대상 임직원 제외)이며, 그 외에 에이스와 KKK에게 추가로 고용의무가 있거나 그러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는 없다.
14. 환경, 안전 및 보건: 인수대상회사는 환경,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인수대상회사는 환경,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인수대상회사가 사용 중인 토지 또는 그 주변에 유출, 누출, 방출, 발산, 주입, 투기 또는 투하한 바 없고, 에이스는 한국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여 에이스의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바 없으며, KKK는 중국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폐수, 폐기를 배출하여 KKK의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바 없다. 인수대상회사는 환경 관련 정부인허가 또는 환경,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처벌, 제재, 시정요구 또는 배상요구를 받은 바 없다. 인수대상회사는 관련 법령상 그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안전, 보건 관련 정부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어떠한 정부기관도 인수대상회사가 사용 중인 토지와 관련된 오염을 제거하거나 조사하거나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또한 어떠한 정부기관도 인수대상회사의 임직원에게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인수대상회사의 임직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인수대상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해당 직업병이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보상이 완료되거나 해당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 인수대상회사는 산업안전에 요구되는 법령상의 기준 및 동종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환경,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분쟁은 없고, 그러한 분쟁이 계류될 우려도 없다. 시기를 불문하고 인수대상회사가 소유, 점유 기타 방법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기타 자산과 관련하여, 제반 환경 관련 정부인허가 및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인수대상회사가 잠재적 또는 현실적으로 오염물의 제거, 매립, 정화, 손해배상, 금전보상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15. 장부 및 기록: 인수대상회사의 장부 기타 기록(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고 유지되었다.
16. 보험: 인수대상회사가 체결한 주요 보험목록은 공개목록 16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인수대상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현재 유효하다. 이러한 보험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거나, 인수대상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체결하거나 필요로 하는 일체의 보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수대상회사는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보험의 해지 또는 취소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바 없다.
17. 유가증권, 담보, 보증 등: 공개목록 17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인수대상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 기타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 3자의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 또는 보증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
18. 세금: 인수대상회사는 모든 세무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에 이행하였고, 그러한 세무신고는 사실이며 정확하다. 인수대상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였다. 인수대상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 3 자에게 지급한 모든 대금으로부터 정확하고 적절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였고, 동 금액을 적법하게 정부기관에 납부하였다. 인수대상회사가 부담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분쟁은 없으며, 그러한 분쟁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i)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 중 최종일의 것에 반영된 채무, (ii) 2010년 9월 30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하여 인수대상회사의 장부에 반영된 채무를 제외하고, 인수대상회사에는 여하한 추가적인 세무 관련 채무, 책임 또는 의무(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 특히 (i) 에이스의 유보매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의 차이로 인하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 및 (ii) LSAQ로부터의 영업양수 및/또는 LSAQ의 청산과 관련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를 포함한다)가 없다.

1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9.1 인수대상회사가 그 계열회사, 주주, 임직원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 행한 거래에 관한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인수대상회사 및 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포함하여 독립된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해 관련 법령 위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9.2 인수대상회사가 그 계열회사, 주주, 임직원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 행하는 거래의 상대방 당사자는 그 근거계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 항에 언급된 거래에 관해 해제, 해지, 기간연장의 거부, 계약조건 변경의 요구, 계약상 의무이행의 거부가 이루어질 사정이나 상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0. 제품: 거래종결일 이전에 인수대상회사가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제품은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부합하게 제조, 공사 또는 판매되었고, 그에 관련된 하자 또는 결함에 관하여 하자보수충당금(해당하는 경우)을 초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자 또는 결함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관련 정부기관에서 또는 법령에 따라 리콜을 권고, 명령한 바 없고, 그러한 리콜 사유도 없다. 공개목록 20은 인수대상회사가 하자보수의무(명시적인 것인지 여부 및 서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인수대상회사가 제조, 공사 또는 판매한 제품이다. 인수대상회사가 그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거나, 제 3 자가 인수대상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인수대상회사 기준재무제표상으로도 하자보수충당금(해당하는 경우)도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

21. 정보제공: 양도인은 인수대상회사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였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진실만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자료 및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이 없다.

별지 5.1(g)(2)에 대한 공개목록

별지 7.1(g)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이 제공하기로 한 정보 또는 자료

Category	Request List	비고
재무/HR	개발비 관련 자산성 검토자료 (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양도인
	R&D 세액공제 관련 공조관련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및 안분계산에 대한 근거자료 (2008년 7월 이후 자료는 거래종결 전까지, 2007년 이후 2008년 6월까지의 자료는 거래종결일 후 45일 이전까지)	양도인
	KKK 보증채무의 내역을 update 제공(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양도인
	임원관련 개인정보/계약/처우/보상 등에 대한 상세 정보(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핵심인력 대상 List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정보 (양도인, 에이스, KKK) (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전체적인 개인별 상세 정보 - 3개년 평가결과 포함 (양도인, 에이스, KKK) (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보상항목/수준 및 개인별 보상 관련 자료 (양도인, 에이스, KKK) (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양도인에서 ACE/KKK로 파견한 인력의 상세 정보 (인사기록, 보상정보, 계약사항 등) (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상세 정보 (기관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 총당금) (본 계약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별지 7.2(i)

협력업체 명단

별지 9.6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GHP 제품

첨부 4.2(f)

확인서

- 수신: 1. LLL 주식회사
대표이사 [●]
2. AAA 주식회사
대표이사 [●]

1. 본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와 LLL 주식회사(이하 “LLL”) 사이에서 2011 년 [●]월 [●]일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AAA으로부터 사직하고, 2011 년 [●]월 [●]일(또는 그 이전에 별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서에 기재된 날, 이하 “거래종결일”) 직전에 유효한 근로조건보다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LLL로 입사함으로써 본인과 AAA 간의 근로관계가 LLL에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거래종결일까지 AAA에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채권을 제외하고는 AAA 또는 LLL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 청구권 또는 권리도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AAA에 근무함으로써 거래종결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일 AAA으로부터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동 금원에 관해서 LLL에 대한 채권, 청구권 또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퇴직금은 LLL에 승계되어 LLL로부터 지급받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해당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AAA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LLL에 승계되어 LLL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3. 기타 본 확인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인과 LLL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바 내지 LLL의 근로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4. 본 협약서는 3 부 작성하여 각각을 원본으로 하며, 각 1 부를 본인, AAA 및 LLL가 보관합니다.

일자: 201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첨부 4.2(h)

임시서비스제공계약의 대상, 주요 조건 및 정보

1. 임시서비스제공계약 대상 항목

임시서비스제공계약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전주공장 토지 및 공장 사용 관련 임대차 (전주공장 공조동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비용은 연 1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함. 전주공장 공조동 건물 및 토지의 최초임대차기간은 거래종결일부터 2년으로 함. 단, 양수인의 요청으로 최대 6개월 간 임대차기간이 연장됨. 양수인은 조기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

나. GHP 엔진 공급계약 및 기술지원

다. 양도인 계속 보유 특수사업부 제공 서비스계약(화학분석, 비파괴검사, 3차원측정, 인장시험장비 및 인원제공 서비스 포함) 및 R&D(진동 소음 등 포함) 관련 용역

라. 양도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들이 공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IT시설, IT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지적재산권 및 본건 사업, 에이스 및 KKK의 과거 데이터 접근을 위해 필요한 이용, 공동사용 또는 기술지원

마. 본건 사업 관련 시설 또는 장소에 관한 공동 또는 단독 이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임대차 기타 서비스 제공계약(제 3자 제공 서비스 포함). 임대차 서비스 제공 비용과 관련하여, 공동자산의 경우 그 비용은 (해당될 경우) (i) 감가상각비에 (ii) 본건 사업 기준채무채표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는 추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반영하여 정함.

바. Utility 공급

사. 양도인 보유 상표권의 거래종결일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

아. 보험 관련 약정(대위청구 금지, 양도인 소유 자산, 임직원 관련 보험사고에 대한 양수인 책임 없음)

자. 기타 양도인이 본건 사업, 에이스 및 KKK를 운영함에 있어 계열사 또는 제 3자와 체결한 용역, 물품 시설물의 공급, 제공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으로서, 양수인이 거래종결 후 본건 사업 등을 단독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항 일체

2. 임시서비스제공계약 대상 항목에 대한 가격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조건

(1) 임시서비스제공계약상 사용료 또는 대가는, 종래 해당 항목에 대해 배분비용이 존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배분비용에 준하여, 그리고 양도인의 타사업부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정되고, (2) 그렇지 않은 경우 양수도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무상으로 함.

임시서비스제공계약 대상 항목 및 그 가격과 관련해, 양도인은 그 관련 제공 자료 및 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고, 그에 기초에 대상 항목과 가격을 결정함.

첨부 4.2(i)

사임서

본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2011년 [●]월 [●]일부로 동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합니다.

2011년 [●]월 [●]일

성명: [●] (인)

[개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첨부]

사임서

본인은 주식회사의 이사로, 2011년 [●]월 [●]일부로 동 이사의 직을 사임합니다.

2011년 [●]월 [●]일

성명: [●] (인)

[개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첨부]

사임서

본인은 주식회사의 감사로, 2011년 [●]월 [●]일부로 동 감사의 직을 사임합니다.

2011년 [●]월 [●]일

성명: [●] (인)

[개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첨부]

卸任书
사임서

本人系乐星空调系统(山东)有限公司的董事、董事长及总经理，于 2011 年[●]月[●]日卸任该董事、董事长及总经理职务。

본인은 낙성공조계통(산동) 유한공사의 동사, 동사장 및 총경리로서, 2011 년 [●]월 [●]일부로 동 동사, 동사장 및 총경리의 직을 사임합니다.

2011 年 [●]月 [●]日

姓名: [●] (印)

2011 年 [●]월 [●]일

성명: [●] (인)

以上□ 容由股东确认。LS MTRON LTD

签字: _____

姓名: [●]

职位: [●]

이상 내용 확인: 주주 AAA 주식회사

서명: _____

성명: [●]

직책: [●]

卸任书
사임서

本人系乐星空调系统(山东)有限公司的董事, 于 2011 年[●]月[●]日卸任该董事职务。

본인은 낙성공조계통(산동) 유한공사의 동사로서, 2011 년 [●]월 [●]일부로 동 동사의 직을 사임합니다.

2011 年 [●]月 [●]日

姓名: [●] (印)

2011 년 [●]월 [●]일

성명: [●] (인)

以上□ 容由股东确认。LS MTRON LTD

签字: _____

姓名: [●]

职位: [●]

이상 내용 확인: 주주 AAA 주식회사

서명: _____

성명: [●]

직책: [●]